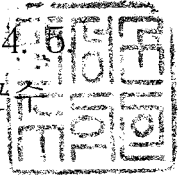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91
----------	------

제출일자 : 2023. 4. 16

제출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주민투표권자 기준 연령 하향,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으로 상위 법령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복 및 개정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안 제3조)
- 나. 주민투표 대상을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에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 제10조)
- 라. 리·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리·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2조 ~ 제16조)
- 바. 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한 서식 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3. 2. 28. ~ 3. 20.)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 추계서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를 “「주민투표법」에서”로 한다.

제2조의 제목“(군의 책무)”를“(군수의 책무)”로 하고,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하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주민이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중 “성명·주소·생년월일”을 “성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사항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위촉하고, 그 심의·의결절차 종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5조(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2제2항에 따라 부군수가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7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로 하고,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6조)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기재하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군의 책무) ①~③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신 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1조(목적) ----- ----- 「주민투표법」에서 -----.</p> <p>제2조(군수의 책무)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p>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리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하

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리별 구분하여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체류지-----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

②~④ (생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

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군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②~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

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삭 제>

<삭 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1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고, 제4항2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의원의 임기내로 한다.

⑥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임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은 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 사항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위촉하고, 그 심의·의결 절차 종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군

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신 설>

<신 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⑧, ⑫ (생략)

⑨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5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2제2항에 따라 부군수가 심의회의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⑦ (현행과 같음)

⑤ -----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
-----.

⑥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 아니하다.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주민투표업무 담당6급이 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4조~제15조 (생략)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6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7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제19조(현행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20조(공표방법 등) -----

-----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

-----.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 하고 별지로 작성</p> <p><신 설></p>			

【별지 제2호 서식】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p>※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p>제외지역 :</p>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3.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 실시 구역 변경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 []필요없음</p> <p><변경 사유></p>		
<p>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p> <p>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p> <p>4.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p> <p>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p>			

【별지 제2호 서식】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p>※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p>제외지역 :</p>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p> <p>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 제3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 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 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신 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주소란에는 도로명파 건물번호까지 기재하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교란에 그 삭제일지를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책중 ○권)란에는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주소란에는 도로명파 건물번호까지 기재하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 세류지를 기재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교란에 그 삭제일지를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p>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p> <p>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p>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 주민투표법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⑨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제출 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2호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서재정

